2024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종합안내서

2024. 3.



목 차

1. 시험개요	1
2.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2 · 5
□ 시험정보····································	12 12 13
4. 시험시행 1	14
5. 합격자발표 1	19
6. 자격증 발급 2	20
□ 증명서 발급 안내 2 □ 답안카드 열람 안내 2 □ 응시확인서 안내 2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률 2	24 24 25 25 26 26
8. 자주하는 질문(FAQ) ······ 2	27

1. 시험개요

□ 2024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구분		2024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0.101.1	기간	상반기	인터넷: 2024. 1. 3.(수)~ 1. 10.(수)			
		하반기	인터넷: 2024. 7. 2.(화)~ 7. 9.(화)			
응시원서 접수	응시 수수료	• 37,000원	· 37,000원			
	장소	• 인터넷 접	• 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 [응시원서접수]메뉴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시험장	고기	상반기	2024. 2. 7.(수)			
\\\\\\\\\\\\\\\\\\\\\\\\\\\\\\\\\\\\\\	<u>∘</u> <u>⊤</u> .	하반기	2024. 8. 7.(수)			
시험장 선	1 F]] フ] フ -	상반기	2024. 2. 7.(수) ~ 11.(일)			
시험성 소	!엑기신	하반기	2024. 8. 7.(수) ~ 11.(일)			
응시표 출	려기가	상반기	2024. 2. 14.(수) 부터 시험당일			
하시프 됨	[역기신	하반기	2024. 8. 14.(수) 부터 시험당일			
	일시	상반기	2024. 3. 9.(토)			
		하반기	2024. 9. 7.(토)			
시험시행	장소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정보] - [시험장소]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합격자 발표	일시	상반기	2024. 3. 26.(화) 10:00			
		하반기	2024. 9. 26.(목) 10:00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합격자조회]메뉴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SMS 통보				

2.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의료법」 제80조, 「의료법」 부칙(법률 제13658호, 2015.12.29.),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격사유는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응시자격: 「의료법」 제80조, 「의료법」 부칙(법률 제13658호, 2015.12.29.),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 (1)「의료법」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 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 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 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 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③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

- 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 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 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4) 「의료법」부칙 <법률 제13658호, 2015.12.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 21조제2항제13호, 제33조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항제5호,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이수시작일	응시자격
2018.12.31. 까지 지정평가와 상관없이 응시가능	
2019.1.1. 이후	지정받은 기관의 교육생만 응시가능 (2019년 상반기 시험부터)

결격사유 등 : 「의료법」제8조, 제10조

- (1)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 지한정후견인
 - 4. 이 법 또는 「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인터넷 개인 접수

* 단체접수는 [국시원 홈페이지]-[공지사항]-[간호조무사 온라인 단체접수 시스템 개선 안내] 참고

인터넷 개인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입력사항(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 회원가입: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응시표 출력,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실명인증

■ 실명인증

-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 ②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에 문의
- 원서접수 내용은 접수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응시원서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
 - 입력사항: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졸업학교(학과), 졸업(예정)일자, 응시지역
 - ※ 주소 : 실제 거주지를 입력하여도 관계없습니다.
 - ※ 사진파일 등록 : 등록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 사용됩니다.
- 사진준비

■ 사진

- ①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 ② jpg, bmp, png 포맷
- ③ 276*354 픽셀 이상 크기
- ④ 해상도 200dpi 이상(600dpi 이상 권장)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www.easypay.co.kr [고객지원] [결제내역 조회]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응시원서관리] [응시원서선택] [응시원서수정] 메뉴
- 수정 가능 기간 및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접수 마감일~시험일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교육기관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에서「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참고)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응시원서 선택] [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당일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 방문접수



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
- ※ 그 외의 경우 인터넷 접수만 가능(단, 국시원 별관에 방문하여 민원PC로 인터넷 접수 가능)

방문 접수처

국시원 별관 고객지원센터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 ※ 외국학교 졸업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 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 자)」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서식모음]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단, 1994.7.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사실확인서 제출)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 면허증사본(또는 재학사실확인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 단,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생략 가능.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 단,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 가능.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접수 기간 중 18:00까지

응시원서 사진 관련 유의사항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 면허 사진 변경: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

-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개인접수만 조회 가능)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감면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 응시취소 신청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 인증 후에 신청

방문, 우편: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팩스: 02-2251-6329

이메일: call@kuksiwon.or.kr

* 팩스 및 이메일 송부 후 1544-4244로 수신여부 확인

제출서류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응시취소 및 환불 신청 마감일

인터넷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방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팩스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 환불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함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환불금액	번 호	환불 사유	신청기한	제출서류
	1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 접수마감일 후 하는 경우 7일까지		-	
	2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입영통지서
	3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 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응시수수료의 100%	% 다구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기계 의 기계	시험일 후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5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30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류
	6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 시)
	7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안내
	8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
응시수수료의 50%	•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출제정보

□ 시험정보

시험과목, 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문제형식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문제형식
1	1. 기초간호학 개요 [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2. 보건간호학 개요 [15] 3. 공중보건학개론 [20] 4. 실기 [30]	09:30	10:00~11:40 (100분)	1점	객관식 5지 선다형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출제범위(링크)

□ 예시문항

- 1.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해당 병원체가 전파될 위험이 높은 행위는?
- ① 병실 출입 전에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 ②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환의를 교환한다.
- ③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환자의 혈압을 측정한다.
- ④ 홑이불 교환 후 환기시키기 위해 병실 문을 열어둔다.
- ⑤ 검사실로 이동하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 2. 수정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 ① 인두제
- ② 봉급제
- ③ 포괄수가제
- ④ 총액계약제
- ⑤ 행위별수가제

4. 시험시행

□ 시험방법

• 시험은 지필시험 방식으로 응시자는 배부된 문제지를 받아 답안카드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문제 및 가답안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응시자 안내사항'을 참고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됨
-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 O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 불가
- O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 불가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
-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 불가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O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스마트)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를 제출할 것
 - O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O점' 처리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적절히 배분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
 - O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함
-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
 - O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 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O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O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함
- O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히는 것 금지
- O 답안카드에는 시험 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하지 말 것
-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 가능
 - O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 교체 가능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하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도 사용 가능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
 - O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 O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답안카드에 시험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 요망
-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안내 동영상(링크)
- □ 2024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링크)

□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법」제10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의거하여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의 응시가 3회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음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실기작품 및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제작)하는 행위
-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카드를 제출하는 행위
- 8.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 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제3조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기타 유의사항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

5. 합격자발표

□ 합격자 결정방법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취소 가능

□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예정일

구분	일시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2024. 3. 26.(화) 10:00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2024. 9. 26.(목) 10:00

합격자 확인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 발표 보류

※ 발표보류 관련자는 [국시원 홈페이지]-[공지사항]-[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관련 사전 안내] 참고

6.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 절차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자격증 발급



자격증 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
-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즉시 발급은 불가능
- 보내실곳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국시원 홈페이지 -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확인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1. 대상자 전원 공통서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2. 대상자별 추가서류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 학력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
-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평생교육시설의 간호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
-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졸업증명서 1부.

※ 의료법 제8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 외국학교 등을 졸업하고 외국의 면허(자격)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증명서, 면허(자격)증 등에 대하여 졸업학교 등이 속한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단,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과거 서식에 직접 작성하거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없이 신청한 경우 접수 불가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국시원에 방문하여 면허(자격)증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수령방법 선택가능
-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면허증 수령 방법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선택
 - · 방문으로 선택 시 '방문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수신 후 국시원 별관으로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필참)
 - 우편으로 선택 시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
 - ·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되므로 실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
- 신청서 출력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에서 작성 후 출력

졸업증명서

- 사본 불인정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아래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후 방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진단일(발급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본 불인정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서식모음] [전직종]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 제출서류
 - * 사진교체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원본, 신분증 사본, 사진 1매 (3.5*4.5cm)
 - * 이름변경: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원본,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상세) 원본
 -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에 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자격증 교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결격사유 조회 서류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의 경우
-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서식모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시까지 결격사유 조회가 안 된 경우, 5일 이상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신청
- 외국인의 경우
- 결격사유 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 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

국가	발급처	관련서류명	내용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사실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AFFIDAVIT	유무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대사관		
대만	주한타이페이대표부	성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국	해당시 공증처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이보	일본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	해당 시청	신분증명서	금치산자·파산선고 사실유무

※ 위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544-4244)로 문의

□ 면허(자격)증 신청 방법 안내(링크)

7. 기타

□ 증명서 발급 안내

- 국시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증명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 바코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원본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과 구분할 수 있는 복사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은 국시원 홈페이지 원본확인 메뉴에서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

이용안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에 한해 다음 서비스가 제공됨

- 성적 열람(과목별 취득 점수 및 평균 점수)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 * 2011년 이전 시행한 시험의 응시자는 전화(1544-4244)로 문의

수수료 안내

- 성적 열람 : 무료
- 성적증명서·합격확인서 발급 : 1,000원

신청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증명서 발급 신청]

□ 증명서 발급 안내(링크)

□ 답안카드 열람안내

- 답안카드 열람(필기 시험에 한함)은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에 한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인 가능
- 답안카드 열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
- 열람방법 : 국시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 후 회신을 받은 응시자는 방문 희망일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국시원 별관 2층 시험관리부에서 '답안카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속하게 답안카드 확인이 가능
-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직접 본인의 문제지를 지참하여야 하며, 국시원에서는 문제지를 제공하지 않음.
- ※ 방문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구의역 1번 출구)

□ 응시확인서 안내

• 응시확인서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으며, 응시확인서 발급은 2011년 이후 시험부터 가능

응시확인서 발급 절차

- 합격자 발표 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신청 > 담당자 승인 (발급 승인) > 본인 인증 후 발급 완료(출력 가능)
- ※ 발급 신청부터 출력까지 7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합격자 발표 후
- 로그인 > [면허·자격·증명서] > [응시확인서 발급] > 발급 신청 > 본인 인증 후 발급 완료(출력 가능)
- ※ 해당 시험의 결시 응시자는 응시확인서 발급이 불가
- ※ 발급신청과 동시에 완료되어 출력 가능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률(링크)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분석결과(링크)

국시원에서는 매년 홈페이지에 직종별 분석 결과를 공지.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출제자료] - [국가시험 분석결과] 에서 확인 가능

□ 고객상담센터(1544-4244) 운영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시간 이외에는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질문하기 메뉴를 이용

8. 자주하는 질문(FAQ)

Q1. 시험일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시험일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12월 중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험시행계획의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응시자격
- 2. 시험일정
 -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2) 응시수수료
 - 3) 시험일
 - 4) 합격자발표 예정일
 - 5) 필기시험 지역
 - 6) 시험장 공고일
- 3. 시험장소(응시지역)
-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6. 시험시간표
- 7. 합격자 결정방법
- 8. 응시자 유의사항
-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 10.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응시자 협조사항
-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사항

단, 시험 장소는 시행지역만 발표됩니다. 구체적인 시험장은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Q2. 시험 중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빨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없지만 시험 중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 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분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으면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처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개통하지 않아 통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처분 대상 물품이됩니다.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다기능시계, 카메라펜,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는 시험 중에 소지하면 안됩니다.

전자기기, 통신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온 경우, 시험시작 전에 시험 진행 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한 기기 일체를 가방에 넣어서 교실 앞으로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귀마개(이어플러그)도 시험시간 중에는 착용해서는 안 되며, 이외에 시험 관련 자료나 교재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향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시험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시험장소 공고일은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시험일 30일 전에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홈페이지 상단의 "시험정보" - "직종별 시험 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해당 직종을 선택하시면 해당 직종의 시험일정, 응시자격 등 시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시험장소"를 클릭하면 시험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표 출력 기간에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시험장소를 확인하거나,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응시자는 접수할 때 선택하여 국시원이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시원은 미리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를 각 시험장에 배포하며, 감독관은 이것으로 응시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응시자의 인적 사항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응시자가 배정된 시험장에만 배포하므로, 응시자의 정보는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장 이외의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Q5.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 국시원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응시자가 직접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험장 선택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지역만(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선택한 후, 시험장 공고일에 응시지역별 시험장을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 내 시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시험장 선택기간동안 "응시원서 수정"메뉴에서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며 기간 내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소를 국시원에서 임의로 배정하게 됩니다. 시험장이 1개 뿐인 응시지역은 별도로 시험장소를 선택하지 않아도 시험장 선택기간 경과 후 일괄 배정될 예정입니다.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에는 시험장만 선택·변경할 수 있으며, 응시지역은 변경할 수 없으니 응시원서 접수 시에 희망하는 응시지역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6. 응시지역과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나요?

☞ 필기시험 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지역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착순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신청방법(인터넷)	
○ 타 지역으로의 변경	•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에서 변경	
	• 응시표 출력일 이후 시험시행일 5일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동일지역 내에서의	• 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시험장 변경	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시험장 선택제 해당 직종의 경우 시험장 공고일로부터 5일간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Q7.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험문제를 열람할 수 있나요?

☞ 시험문제 및 가답안은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홈페이지-고객소통-이의신청』에서 시험일로부터 5일 간 시험문제지 및 가답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Q8. 예비마킹을 해도 되나요?

☞ 답안카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답안카드 채점은 OMR 판독기가 아닌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의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에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 표기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Q9. 시험 중 화장실에 갈 수 있나요?

☞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응시자는 시험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시간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감독관에게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제출한 후 소지품은 교실에 둔 채로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시험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시험 종료 타종 이후에 입실 가능합니다.

2024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종합 안내서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행인 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1544-4244 www.kuksiwon.or.kr mw@kuksiwon.or.kr